

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 : 「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나.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9조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다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”을 “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료급여기금”을 “구미시 의료급여기금”으로, ““회계””를 ““특별회계”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(준용)”을 “(관리 및 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이 조례에”를 “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제2조(세입과 세출) <u>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</u>는 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 제8조(준용) <u>이 조례에</u>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 <u><신 설></u>	<u>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</u>----- -. 제2조(세입과 세출) <u>구미시 의료급여기금 -- “특별회계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8조(<u>관리 및 운용</u>) <u>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-- 따른다.</u> 제9조(<u>존속기한</u>) <u>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소관 실·과		주민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변 동 석
	담 당	손 재 하
	담 당 자	이 은 희 (480-5133)